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진연구자 지원 근거 신설 등〉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467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성과평가 개선(안 제3조 제8항 및 제12조제1항)	2
※ 참고자료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8453호,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21.

다. 회 부 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과평가 체계는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되어 있어,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은 신진연구자들이 파급력이 큰 연구보다는 당장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연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장기적 연구에 대해서는 동료평가와 연구의 독창성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표준 성과지표 개발 시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장기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소신 있게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성과평가 개선 (안 제3조제8항 및 제12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3조제8항은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임.

- 안 제12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 도전적·장기적 연구 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과 신진연구자 등 연구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장기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 원칙) ① ~ ⑦ (생략) <u><신설></u>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 원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u>「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신진연구</u>

현행	개정안
⑧ ~ ⑩ (생략)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구자(이하 “신진연구자”라 한다)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 ⑪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 ----- ----- ----- -----유형, 도전적·장기적 연구 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신진연구자 등 연구자의 특성 및----- ----- ----- --. 이 경우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장기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연구개발성과는 연구분야와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성과가 나타나는 형태와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의 독창성, 파급효과 등 질적인 성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진연구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주제를 형성하고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이들이 창의적·도전적 연구와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제2항)1),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같은 조 제5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 ⑩ (생략)

○ 또한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하고(제12조제4항)²⁾,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제13조제1항)³⁾.

○ 아울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⁴⁾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파급효과 등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선정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평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장기적 연구개발에 대하여 연구의 독창성과 파급효과 등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조제8항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의 성과평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평가의 기본 원칙에 특정 연구자 집단을 위한 성과지표의 마련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에 개별 연구자 집단별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 성과평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과 개별 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평가기준 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질 수 있음.

- 또한 현행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서 이미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과제 등의 특성을 고려하며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부분은 현행 규정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안 제3조제8항은 신진연구자에게 적합한 평가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에서 특별히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성과평가 기본원칙의 일반성을 함께 고려하여 별도 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전략계획과 연구기관의 기관운영계획·연구사업계획에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개별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특성과 연구자의 특성을 표준 성과지표에 직접 반영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표준 성과지표에 관한 조문의 기능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연구의 독창성과 파급효과는 평가기준 또는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동료평가는 연구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방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질적 성과지표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성과지표와 평가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신진연구자와 도전적·장기적 연구개발과제에 적합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연구분야,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규모 및 연구단계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현행 제13조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신진연구자의 범위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그런데 해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453호,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에서 신진연구자의 정의와 박사후연구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법 개정안의 인용조문과 지원대상도 함께 정비

되어야 함.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평가의 기본원칙에 특정 연구자 집단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

참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8453호,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의2. (생략)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2. ~ 7. (생략) ④ (생략)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신진연구자 및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 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이공계 신진연구자 지원) ① -----신진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으로, 박사후연구원(박사학위 취득 후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현행	개정안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u>박사후연구원</u>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 -----. ② ----- -----<u>신진연구자</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 ----- ----- -----<u>있는 사람 또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u>----- ----- ----- ----- ----- -----. ② (현행과 같음)